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76 발의연월일: 2025. 4. 21.

발 의 자: 민형배·김문수·주철현

이성윤 · 김동아 · 박지원

양부남 • 이개호 • 김현정

박균택 • 문정복 • 손명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매년 구매목표를 의무 설정하여 구매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하나,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어, 제도가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 회적기업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이라는 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2항).

법률 제 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	②
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u>위한</u> 구	<u>위하여</u>
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